-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88호

2021. 05. 1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5. 1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2020. 12. 22. 일부개정, 2021. 6. 23. 시행)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」로 함.

○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(안 제2조)

○ 위원의 제척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
○ 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지급,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○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2020.12.22. 일부개정, 2021. 6.23. 시행)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야 함.

○ 동 조례는 2012년 4월5일 개정 된 이후 9년 여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4년 5월 28일 「여성발전 기본법」에서 「양성평등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.

○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와 해촉, 그리고 간사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.

나. 검토 내용

○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칙 11조항,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」로 개정하였음

○ 안 제2조(구성)에 개정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제3항 "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"을 반영하여 구성인원을 정비하였음.

- 또한,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성비 구성을 신설함.

○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·회피 조문을, 제8조에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하였으며, 제9조에 간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음.

○ 부칙은 2개 조문으로 제1조는 「공직자 윤리법」 개정안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규정하였고, 제2조는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공직자윤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「양성평등 기본법」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규정하는 등, 상위법령을 따르고 있음.

○ 현행 조례는 2012년4월5일 개정 이후 약 9년 간 개정을 하지 않아 조문 개정과 정비 등을 할 필요가 있음.

○ 상위법령을 따르고 있고, 변화한 시대상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